

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20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9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제정이유

원인자·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교부금, 징수 위임수수료 및 국가의 출연, 보조 또는 용자금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,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,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) 제3항, 제4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3조, 제18조제4항
- 나. 예산조치 : 비 예산사업
- 다. 기 타
입법예고(2006.8.11 ~ 8.31)결과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기반시설”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.
2. “기반시설부담금”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.

제3조(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)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 및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교부된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서울특별시 교부금
2.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 위임수수료
3.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출연·보조 또는 융자금
4. 기타 수입금

제5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
2.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
3.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 및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」에 따른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